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5. 11. 24.)

나. 회부일자 : 2025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25. 12. 22)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태하천과장)

가. 제안이유

-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보상업무에 대하여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사무명 : 자호,현내 및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 수탁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 위탁사무의 내용
 -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조사
 -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관련 사항의 조사
 - － 보상업무 관련 지적(현황)측량 업무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조사 및 작성
 -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 손실액의 평가 및 광역 등의 손실에 관한 조사
 -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보상평가의뢰서 작성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 보상협의를,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이의신청 포함)업무 및 “갑”의 소송업무 수행지원
- 토지 등의 등기관관련 업무
-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전비(분묘연고자 확인, 무연분묘 개장 및 이장 업무 포함), 영농보상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및 지급
- “갑”의 해당지역 시군의 보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지원
-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및 재결보상금의 지급·공탁에 관한 업무
- 그 밖의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토지보상법상 규정된 보상업무 등

○ 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보상업무 종료 시점까지

○ 위탁사업비 : 2.3억원

○ 추진경과

- 2022. 08. : 경상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 2022. 12. : 보상업무 대행사업비 42억원 지출
- 2023. 10. : 보상업무 대행사업비 49억원 지출
- 2024. 03. : 사업시행 이관 (경상북도 ↔ 포항시)
- 2025. 06. : 2025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025. 07.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정 통보
- 2025. 11. : 제326회 임시회 보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적정성 검토 근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行的 적정성 검토)

나. 검토 내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직접수행 민간위탁 용역 등의 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성 검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 관련 정보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 공공기관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직접수행이나 민간위탁보다 적절함. 또한, 2024년 3월 21일 우리 시로 이관되기 전까지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간 위탁방식으로 추진된 바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일 기관 위탁이 필요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공급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불확정성 해소 및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합한 기관임. 본 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보상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공적 책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상 민원 대응 및 보상자료의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함.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네트워크 등의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정도 등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위탁사업과 관련한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상 및 공공사업에 특화된 전문 전담 인력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이미 구축된 인력 운영 체계, 업무용 시설, 지역 내 행정·사업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인력 확보나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의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탁 수행기관으로 적절함.
④ 수탁·대행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공공기관의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효과 등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 및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유사 위탁사업을 다수 수행해온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이 높음.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상 대상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민원 최소화, 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단독 수행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 설정, 성과측정 가능성 등	보상 협의율, 민원 발생 건수, 처리기간 등 정량지표를 통해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 질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위탁·대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고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예방하고 있음. 또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를 운영 중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⑦ 책임행정의 보장성	수탁기관에 권한 및 법적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책임 행정 보장	본 사업은 수탁기관에 해당 사무의 수행 권한과 함께 관련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주체적 책임 이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적정성 검토 결과

- 대규모 공사 추진에 따른 보상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전문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사무위탁의 공정성, 효율성, 연속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가. 심의 근거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심의 개요

- 일 자 : 2025. 6. 30. ~ 7. 2.
- 심의방법 : 서면심의(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심의내용 : 자호, 현내 및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 업무 위탁(수탁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다. 심의 결과 : 적정(91.4점 / 공공성 28.6, 효율성 62.8)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2.3억원

나. 사업지구별 위탁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보상금액	요 율	위탁사업비	비 고
합 계	123		2.3	
자호지구	59	$0.6 + 29 \times 1.7\%$	1.1	
현내지구	23	$23 \times 2.0\%$	0.4	
가사지구	41	$0.6 + 11 \times 1.7\%$	0.8	

다. 위탁수수료의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제43조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비고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향후 추진 계획

- 위탁 계약 체결 : 2026년 1월

4. 제안근거

- 「토지보상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8조(의회 동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동의안은 「자호, 현내, 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 보상업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계획 수립, 권리관계 및 손실조사, 보상액 산정 지원, 보상협의·지급,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 전 과정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보상업무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를 위탁기간으로 정하되, 특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보상금 규모에 연동하여 산정하였음.
아울러, 공공성·경제성·전문성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민간 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가결되어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함.

- 종합검토 결과,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의 보상업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위탁 근거와 절차에도 부합하고, 이미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이던 위·수탁 구조를 사업주체 변경에 맞추어 조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상업무 추진과정에서 잔여지 보상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잔여지의 형상·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단절 여부, 이용가능성 저하 등 접근성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보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보상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쟁점, 민원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7. 토론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